

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
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(연평균 6.8%)를 보이는 홀로그램 기술 융합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기술변화를 선도하고 산·학·연 기술교류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
- 나. 홀로그램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지원 등 전 주기 기업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 거점 센터 구축 필요
- 다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출연금액 : 금2,850,000천원(도비 855,000천원, 시비 1,995,000천원)
- ※ 1차년도(' 20. 1월 ~ ' 20. 12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

(3) 사업내용 :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

(4) 출연근거

○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
과학기술기본법(제16조의3), 산업기술혁신촉진법
(제11조, 제19조),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
등에 관한 특별법(제15조~제19조, 제21조), 지방
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 례 :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(제5조, 제9조, 제10조),
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

(2)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2021년 12월 (2년간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
(4) 총사업비 : 50억원 [도비 15, 시비 3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50		28.5	21.5		
국 비						
도 비	15		8.55	6.45		
시 비	35		19.95	15.05		

(5) 추진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7) 사업내용

- 홀로그램 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기업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 공간 조성
- 홀로그램 헤리티지·팩토리 실증 및 홀로그램 시스템·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관련 장비 구축
- 홀로그램 관련 제품 개발 기업들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제작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쏠주기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
- 홀로그램 헤리티지, 팩토리를 포함한 홀로그램 실증 제품·서비스 제작 가이드라인 및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
- 홀로그램 품질표준 관련 장비구축, 관련 규제 및 제도 사전 허가 방안 수립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5. 12 ~ 2016. 3 : 홀로그램 융합기술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
- 2016. 8 ~ 2017. 9 : 홀로그램 융합기술 상용화 육성사업 연구용역
- 2017. 5 : 글로벌 홀로그램 산업 포럼 구미개최
- 2017. 12 : 홀로그램 국회포럼(과기부, 경북도, 전북도 공동)

- 2017. 12 : 홀로그래프산업 발전 전략 수립(과기부)
- 2018. 12 :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통과(과기부)
- 2019. 6 :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
- 2019. 11 : 홀로그래프 기술세미나 개최
- 2020. 7 : 홀로그래프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홀로그래프 산업의 63%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홀로그래프 시장 (측정/검사, 부품/소재, 의료기기)으로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기술 지원 거점기관이 필요
- 홀로그래프 관련 기업들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, 요소기술지원, 장비기반 개발지원 등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홀로그래프 관련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주기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
- 홀로그래프 핵심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홀로그래프 기술 중심의 다양한 상용화 제품과 콘텐츠 및 서비스 연결을 통해 新시장을 창출하고 홀로그래프 기술을 접목한 산업 구조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제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~제19조, 제21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

□ 「과학기술기본법」

16조의3(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)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·유통
2.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·단체와

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
3. 전문인력의 양성

4.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인력·기술·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·협력

5.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

6.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

- 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 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 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 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 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 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 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 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 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 10. 삭제 <2013. 3. 23.>
 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 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 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

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
제15조(유망 기술·서비스 등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·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(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)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, 지정 방법,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·공공기관·기업·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제16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

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.

2.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
· 연구개발

3.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인증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편의성·안정성·신뢰성·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(이하 "품질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. 인증을 받지 아니

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
2.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3.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⑥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)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,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·유통·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
2.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
3.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
4.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
5.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
6.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

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2. 문화 확산사업
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제9조(관련사업 추진)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보조)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지 영 목
	담 당	신 미 정
	담 당 자	김 혜 진 (480-6153)